

코헨의 종차별 옹호논증은 옳은가?*

- 도덕적 차이 논증과 종류 논증을 중심으로

이 채 리**

【주제분류】 윤리학, 서양철학

【주요어】 종차별주의, 도덕적 차이 논증, 종류논증, 동물의 권리, 가장자리 인간, 코헨

【요약문】

이 논문의 목적은 코헨의 도덕적 차이 논증과 종류논증이 정당하지 않음을 비판함에 있다. 반종차별주의자들은 종차별주의가 인종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와 마찬가지로 부당하며 ((A1)), 종차별주의의 주장에 따라 동물이 권리를 가질 수 없다면, 가장자리 인간 역시 권리를 가질 수 없다((A2))고 비판한다. (A1)에 대해 코헨은 동물과 인간 사이에는 도덕적 능력의 차이가 있으므로 동물에 대한 차별은 정당하다는 도덕적 차이 논증을 제시하며, (A2)에 대해서는 가장자리 인간은 인간의 종류에 속하므로 권리를 가진다는 종류논증을 제시한다. 그러나 도덕적 차이 논증은 고통과 상관이 없는 기준으로 고통을 차별하는 무관함의 오류를 범한다. 그리고 종류논증은 두 개의 권리 조건을 비일관되게 적용하고, 모호한 '종류' 개념에 의존하며, 집단의 능력을 근거로 실제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개인을 차별하는 부당한 원리에 의존한다. 따라서 필자는 도덕적 차이 논증과 종류논증이 (A1)과 (A2)에 대한 정당한 대답이 될 수 없으며, 인간은 권리를 가지지만 동물은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없다는 코헨의 종차별주의는 옹호될 수 없다고 논한다.

1. 들어가는 말

칼 코헨(Carl Cohen)은 동물은 인간과 달리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없으며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14년도)

** 한양대학교 기초융합교육원 교육진담교수

로, 동물을 실험에 이용하거나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는 등의 동물에 대한 차별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¹⁾ 반면에 반종차별주의자(anti-speciesist)들은 동물에 대한 종차별은 정당하지 않으며, 평등(equality)의 원리는 인간 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피터 싱어(Peter Singer)는 인간과 동물의 이익은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탐 리건(Tom Regan)은 인간 뿐 아니라 동물 역시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²⁾

반종차별주의자들은 종차별주의(speciesism)를 도덕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은 비판을 제시한다.

(A1) 종차별주의는 인종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와 마찬가지로 부당하다.³⁾

(A2) 종차별주의의 주장에 따라 동물이 권리를 가질 수 없다면, 가장자리 인간 역시 권리를 가질 수 없다.⁴⁾

(A1)은 종(specie)을 근거로 동물을 차별하는 것은 인종, 성별을 근거로 차별하는 인종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와 유사한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는 주

1) Cohen, C., "The case for the use of animals in biomedical research",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vol. 315, no. 14, 1986, *Animal Rights Debate*, Rowman & littlefield Pub., 2001.

2) 싱어는 이익동등 고려의 원칙을 리건은 '삶의 주체'라는 기준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전개한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할 것. Singer, P., 김성한 역, 『동물해방』, 연암서가, 2012, Regan, T., *The Case for Animal Rights*, Univ. California Press, 1983.

3) (A1)은 싱어, 라이더, 레이첼스와 같은 반종차별주의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비판이다. Singer, P., 황경식, 김성동 역, 『실천윤리학』, 연암서가, 2014, 103쪽, Ryder, Richard D., "Painism : Moral Rules for the Civilized Experimenter", *Cambridge Quarterly of Healthcare Ethics* Vol. 8, Jan., 1999, 41쪽, Rachels, J., 김성한 역, 『동물에서 유래된 인간』, 나남, 2009, 337-8쪽.

4) 앤더슨(E. Anderson)은 (A2)가 동물윤리와 관련된 핵심논변이라고 말한다. (A2)의 주장자로는 싱어, 리건, 레이첼스 등이 있다. Anderson, E., "Animal Rights and the Values of Nonhuman Life", *Animal Rights*, eds., Cass R. Sunstein & M. Nussbaum, Oxford Univ., 2004, 279쪽, Singer, P., 앞의 책, 105쪽, Regan, T., "An Examination and Defense of One Argument Concerning Animal Rights", *Inquiry* 22, 1979, 189쪽, Rachels, J., 앞의 책, 350-1쪽.

장이며, (A2)는 동물이 인간만큼 우월한 특성을 지니지 못하므로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없다는 종차별주의(speciesism)의 주장은 유아, 식물인간, 심각한 인지장애인과 같은 가장자리(marginal)⁵⁾ 인간들이 권리를 가져야 할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코헨은 (A1)은 형편없는 논증이며,⁶⁾ (A2)는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한다.⁷⁾ 그는 종차별주의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주의와 달리 정당한 것이며, 동물은 권리를 가질 수 없으나 가장자리 인간은 권리를 가질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근거로서 인간과 동물 사이에 도덕적 차이가 있다는 ‘도덕적 차이 논증(moral difference argument)’과 인간은 동물과 다른 종류에 속한다는 ‘종류논증(kind argument)’을 제시하고 있다. 코헨은 도덕적 차이 논증을 통해 비판 (A1)에 대응하고, 종류논증으로 (A2)에 대한 대답을 제시함으로써 종차별주의를 옹호한다.

도덕적 차이 논증과 종류논증은 어떤 것이며, 이 논증들은 옳은 것인가? 본 논문의 목적은 코헨의 도덕적 차이 논증과 종류논증이 (A1)과 (A2)에 대한 정당한 대답인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 논증들을 통해 종차별이 옹호될 수 있는지를 검토함에 있다. 이를 위해 논문의 전개는 우선, (A1)과 (A2)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 본 후(2장), (A1)에 대한 대응인 도덕적 차이 논증의 정당성을 고찰하고(3장) (A2)의 대답인 종류논증의 문제들을 검토하는(4장)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두 논증의 결함을 제시하고 이 논증들이 (A1)과 (A2)에 대한 그럴듯한 대답이 될 수 없으며, 종차별을 옹호하는데 있어서 성공적인 논증이 될 수 없음을 보일 것이다.

2. 종차별주의에 대한 반종차별주의의 비판

코헨의 도덕적 차이 논증과 종류논증이 (A1)과 (A2)에 대한 정당한 대

5) 'marginal'은 '경계선'이나 '한계'로도 번역되기도 하지만, 최훈의 지적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특성을 결여한 사람이라는 뜻으로는 '가장자리'라는 번역어가 더 적절하므로 '가장자리'로 번역하기로 한다. 최훈, 「영장류 실험의 윤리와 가장자리 상황 논증」, 『과학철학』, 12권, 2009, 128쪽.

6) Cohen, C., "The case for the use of animals in biomedical research", 867쪽.

7) Cohen, C., *Animal Rights Debate*, 37쪽.

응이 될 수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A1)과 (A2)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A1)과 (A2)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1) 종차별주의는 인종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와 마찬가지로 부당하다.

: (A1)은 종차별주의는 인종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와 유사하며 후자가 도덕적으로 부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종차별주의 역시 부당하다는 비판이다. (A1)의 대표적인 주장자인 싱어는 인종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가 비도덕적인 이유는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이것을 그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이라고 부른다- 기본적인 윤리 원칙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며, 종차별주의 역시 동일한 이유에서 비도덕적인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한다는 것은 '동일한 이익들에 대하여 동등한 비중을 두는 것'을 말한다.⁸⁾ 즉 x와 y의 동일한 이익은 x가 '나 자신'이거나 y가 '백인'이라는 사실과 상관없이 동등한 비중을 두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종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는 이러한 원칙에 위배된다. 인종(성)차별주의는 x와 y의 동일한 이익, 이를테면, 선거권이나 대학입학에의 이익을 인종(성별)에 따라 상이한 비중을 두어 흑인(여성)의 선거권이나 대학입학 자격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종(성)차별주의는 기본적인 윤리 원칙에 위배되며, 도덕적으로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싱어는 종차별주의 역시 동일한 잘못을 범한다고 평가한다. 종차별적 행위는 y의 이익과 동일한 x의 이익을 x가 동물이라는 이유로 상이한 비중을 두어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동물의 이익은 선거권이나 대학입학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권이나 대학입학 자격은 동물에게는 이익이 아니기 때문이다.⁹⁾ 동물은 쾌고감수능력(sentience)을 지

8) Singer, P., 『실천윤리학』, 53쪽.

9) 그러므로 싱어의 이익평등고려의 원칙을 인간과 동물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동물에

닌 존재로서 고통과 쾌락을 느끼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쾌락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이익을 가질 수 있다.¹⁰⁾ 예를 들어 눈의 점막에 화장품을 넣음으로써 생길 고통을 회피할 이익은 동물에게나 인간에게 모두 동일한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실험과 육식을 허용하는 종차별주의는 인간과 동물의 이러한 동일한 이익, 곧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이익'에 상이한 비중을 두어 동물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싱어는 종차별주의 역시 기본적인 윤리 원칙에 위배되는, 도덕적으로 부당한 것이라고 말한다. (A1)은 고통은 누가 느끼는 것이건 고통일 뿐이며, 인종의 차이 때문에 고통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듯이 한 개체가 다른 생물 종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개체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잘못된 일임을 강조한다.¹¹⁾

(A2) 종차별주의의 주장에 따라 동물이 권리를 가질 수 없다면, 가장자리 인간 역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 (A2)는 인간에게만 권리를 부여할 때 생기는 비일관성을 문제 삼는다. 종차별주의자들은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¹²⁾를 가지며 권리의 소유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인간과 동물의 특성 사이에는 확연히 구분될 수 없는

게 투표권을 부여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김성환이 잘 설명하고 있듯이 인간과 동물의 '서로 다른 이익은 서로 다르게, 서로 같은 이익은 서로 동일하게 취급'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김성환, 「종차별주의 옹호 논변에 대한 대응」, 『철학연구』, 79권, 철학연구회, 2007, 255쪽.

10)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고 보는 근거로 싱어는 고통을 추정할 수 있는 외적 몸짓, 인간과 유사한 신경계를 들고 있다.(Singer, P., 김성환 역, 『동물해방』 41-9쪽) 그리고 최훈은 신경과학적 근거에 의해 동물의 고통에 대해 논하고 있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할 것. 최훈, 「동물신경윤리 : 동물 고통의 윤리적 의미」, 『생명윤리』, 10권, 2호, 2009.

11) Ryder, Richard D., 박민아 외 역, 「제도적인 종차별 : 학대야말로 잘못된 것」 『논쟁 없는 시대의 논쟁』, 이음, 2002, 324쪽.

12) 어떤 존재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그 존재를 도덕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훈, 「간접적 도덕적 지위 이론 비판」, 『철학연구』, 철학연구회, 102권, 2013, 219쪽.

모호한 경계선이 존재한다. 인간의 특성이라 규정되는 ‘이성’, ‘언어’, ‘사회성’ 등은 유아나 식물인간, 인지장애 환자에게서는 -이러한 이들을 가장자리 인간이라고 부른다- 정상인보다 결여되어 있으며, 몇몇 동물들은 이들보다 더 이성적이거나 사회적인 특성들을 가진다. 예컨대 유인원은 인지장애 환자 보다 더 많은 기호를 이해하고 구조화된 구문론을 사용하고, 높은 지능을 가지며, 개나 말, 돌고래 등은 신생아나 인지장애인 보다 지시를 잘 따르고 작업을 보다 잘 완수하며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한다.¹³⁾

(A2)는 이러한 모호한 경계선을 근거로 모든 인간에게 권리를 부여하면서 동물에게는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인간에게만 권리를 부여하는 이성이나 언어, 사회성 등의 특성은 동물뿐 아니라 몇몇 가장자리 인간에게도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정상인의 특성을 근거로 동물의 권리를 거부하고자 한다면 가장자리 인간의 권리 역시 일관되게 거부되어야 하며, 가장자리 인간에게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면 이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능력을 지닌 동물들에게도 일관되게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⁴⁾ 그러나 종차별주의자들은 동물이 가지지 못한 탁월한 인간의 능력을 근거로 정상인 뿐 아니라 가장자리 인간에게도 권리를 부여하는 비일관성을 범한다. (A2)는 종차별주의자들이 인간에게만 권리를 부여하는 그 기준으로는 가장자리 인간들을 고통스러운 실험에 사용하거나 저녁 식사의 요리에 이용하는 일을 부당한 것으로 규정할 근거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반종차별주의자들의 (A1)은 종차별주의의 도덕적 부당함에 대한 비판이라면 (A2)는 종차별주의 논변의 논리적 부당함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할 수

13) Singer, P., "Speciesism and Moral Status", *Metaphilosophy*, vol. 40, no. 3-4, July, 2009, 568-70쪽.

14) 드물게 프레이(R. G. Frey)같은 철학자는 후자가 아닌 전자를 선택하기도 한다.(Frey, R. G., *Rights, Killing, and Suffering*, Oxford : Basil Blackwell, 1988, 115쪽) 그러나 이 논문은 가장자리 사례로부터의 논증을 후자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논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자리 인간은 고려하면서 동물은 배제하는 비일관성에 대한 비판으로 사용함을 밝혀둔다.

있다. 코헨은 (A1)에 대해서는 도덕적 차이 논증을 통해 종차별주의의 도덕적 정당성을 옹호하며, (A2)에 대해서는 종류논증을 통해 논리적 비일관성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3. ‘도덕적 차이’ 논증과 종차별

3-1. 도덕적 차이 논증

코헨은 (A1)에서 주장하는 종차별주의와 인종차별주의의 유사함에 대해 “그럴듯한 구두상의 유사함으로부터 무례한 도덕적 결론을 이끌어낸다¹⁵⁾”고 논평한다. 즉 단어만 비슷할 뿐 인종차별주의와 종차별주의는 다른 것이며 (A1)은 잘못된 유비추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¹⁶⁾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인종차별주의는 인간의 인종 집단 사이의 어떤 도덕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악한 것이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물 종들 사이에는-인간들과 쥐들 사이에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크며 이는 보편적으로 인정된 것이다.¹⁷⁾

즉, 인종차별주의는 도덕적으로 차이가 없는 인간 집단 사이의 차별을 옹호한다는 점에서 부당한 것이지만, 종차별주의는 ‘도덕적인 차이’를 가지는 인간종 집단과 동물종 집단사이의 차별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인종차별주의와 달리 정당하다는 것이다. 코헨은 인간과 동물의 도덕적 차이에 따르는 종차별은 인종차별과 달리 “올바른 도덕적 관점”¹⁸⁾이라고 말한다. 그렇다

15) Cohen, C., "The case for the use of animals in biomedical research", 867쪽, *The Animal Rights Debate* 2001, 62쪽.

16) 추정완 역시 이와 비슷한 반론을 제시한다. 추정완, 「싱어의 종차별주의 비판」, 『생명윤리』, 한국생명윤리학회, 2005, 57쪽.

17) Cohen, C., *The Animal Rights Debate*, 62쪽.

18) 앞의 책, 62쪽.

면 동물과 인간의 도덕적 차이란 어떤 것인가? 그의 대답은 이러하다.

생쥐들은 도덕적 성찰과 관련이 없는 반면에 인간들은 도덕적 성찰에 몰두한다. 인간들은 도덕적으로 자율적이지만 생쥐들은 그렇지 않다. 인간들은... 도덕적 공동체의 일원이다.종차별주의는 이런 차이에 대한 인정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¹⁹⁾

코헨은 인간들은 (C1)도덕적 성찰, (C2) 도덕적인 자율성을 지니며, (C3)도덕적 공동체의 일원인 반면에 동물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도덕적 능력에서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인간은 (C1)을 통해 도덕적 원칙을 만들고, 이해하고, 적용하며, (C2)를 통해 도덕적 원칙에 따라 스스로를 규제할 수 있고 (C3)를 통해 상호간의 도덕적 주장을 교환하고 승인하며 살아간다. 예를 들어 인간은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이익이 되지만 나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그른 것이기에 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성찰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성찰에 따라 공정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자기 이익을 규제할 수 있다. 또한 자기 이익과 공정한 것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공정한 주장을 승인하는 도덕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간다. 그러나 코헨에 따르면, 생쥐나 개, 성계와 같은 동물들은 위와 같은 도덕적 성찰을 의도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으며, 훈련을 통해 금지된 것을 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도덕적 성찰에 따라 스스로를 규제할 수는 없다. 또한 그러한 도덕 원칙에 지배되는 도덕적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지도 않는다. 인간의 삶이 도덕적인 성찰이나 주장, 선택과 같은 도덕적인 것들로 점철되어 있다면, 동물들은 그런 것들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코헨은 인간은 죄를 범할 수 있지만, 동물은 죄를 범할 수 없다고 말한다.²⁰⁾ 왜냐하면 그들은 의도적으로 죄를 저지를 능력이 없으며,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동물들은 도덕/비도덕 개념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그런 개념으로 판단을 할 수도 없는,

19) 앞의 책, 62쪽.

20) Cohen, C., "The case for the use of animals in biomedical research", 867쪽.

도덕과 무관한(amoral) 종인 것이다.²¹⁾

코헨은, 이러한 차이로 인해 동물이 아닌 인간만이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그가 보기에 권리란 하나의 타당한 '도덕적 주장'인데 동물은 그러한 주장을 이해할 수도 행사할 수도 없는 부류에 속하기 때문이다.²²⁾ 즉 (C1)과 (C2)의 능력을 지닌 존재들이 상호간에 도덕적 주장을 하고 이해하고 승인하는 공동체((C3))에서만 권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코헨에 따르면 동물은 생존, 고통회피, 욕구충족 등등의 이익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없으며, 인간만이 권리를 가진다. 예를 들어 인간은 실험으로 고통 받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동물에게는 그것이 불이익이 될지라도 고통을 받지 않을 권리는 없다. 그리고 그에 따르면 권리는 언제나 이익에 우선하기 때문에²³⁾ 권리를 가진 인간이 권리를 가지지 못한 동물보다 언제나 더 존중된다.²⁴⁾

그래서 코헨은 종간의 도덕적 차이에 따라 동물을 차별함을 옹호하는 종차별주의는 인종차별주의와 달리 정당한 것이라고 본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명료하게 생각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때 우리는 모두 종차별주의자이다.”²⁵⁾

21) 그는 이렇게 말한다. “얼룩말들과 암사자들, 그리고 토끼들은 도덕의 왕국에 살지 않는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도덕과 무관하다. 그들에게는 도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그들의 세계에는 그른 것도 없고 옳은 것도 없다.” Cohen, C., *The Animal Rights Debate* 31쪽.

22) 코헨은 권리는 권리에 대한 주장자와 주장을 듣는 자, 권리의 내용이 있을 때 성립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호 간에 도덕적 주장을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Cohen, C., “The case for the use of animals in biomedical research”, 865-6쪽, *The Animal Rights Debate*, 17쪽, 27-36쪽.

23) 코헨에 따르면 이익은 일시적이고 주관적이지만, 권리는 객관적이고 지속된 것으로 도덕 체계 내에서 정당한 요구이다. 그래서 이익과 권리가 상충할 때는 언제나 권리가 이익을 이긴다고 말한다. Cohen, C., *The Animal Rights Debate*, 17쪽.

24) 그는 권리가 인간들에게 성계, 생쥐, 개들의 도덕적 지위와 다른 도덕적 지위를 준다고 말한다.. 앞의 책, 62쪽.

25) 앞의 책, 같은 곳.

3-2. 도덕적 차이 논증은 옳은가?

(A1)에 대립하는 코헨의 주장은 '동물은 인간과 달리 도덕적 능력이 없으므로 차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종차별주의가 동일한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인종차별주의와 다를 바 없다는 (A1)의 비판에 대한 코헨의 대답은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과 동물은 도덕적 능력의 차이가 있으므로 그들의 동일한 이익을 동등하지 않게 고려하는-즉 인간의 것을 더 고려하는- 차별은 정당하다.

이러한 대답은 옳은가? 동물과 인간의 동일한 이익의 대표적인 사례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이익'이다. 코헨은 도덕적 능력을 근거로 동물과 인간의 동일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이익'이 동물에게는 배제되어도 도덕적으로 무방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도덕적 능력, (C1), (C2), (C3)가 없으면 도덕적 주장인 권리를 이해할 수도 행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덕적 주장을 이해하거나 상대방에게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서 눈의 점막에 잉크를 붓고 강제로 담배연기를 마시게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도덕적 주장을 이해하고 행사하는 능력은 도덕적인 법 제정에 참여할 기회- 물론, '법 제정에의 참여 기회'는 동물과 인간에게 동일한 이익은 아니다.²⁶⁾-를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는 될 수 있을 것이다. 도덕적 주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도덕적 주장을 규정할 법을 제정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적 능력은 고통을 피할 이익에 대한 배제 여부를 결정하는 적절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도덕적 능력이 있든 없든 고통은 고통일 뿐 양자는 서로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x에게 고통을 회피할 이익을 배려할 것인지 여부는 x가 고통을 느낄 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이 있는 것이지,

26)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싱어가 주장하는 것은 동일한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것이지 상이한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Singer, P., 황경식, 김성동 역, 『실천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1993, 43-4쪽.

x의 키가 크지, 성별이 어떠하며 피부색이 어떤지, 혹은 도덕적 능력이 있는 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즉 코헨은 무관한 근거를 통해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리건은 코헨의 논증을 무관함의 오류라고 비판한다.²⁷⁾ 도덕적 능력을 근거로 고통을 회피할 이익을 차별해야 한다면 거주지의 우편번호를 근거로 봉급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코헨이 제시한 도덕적 능력의 차이는 동일한 이익을 상이하게 비중을 두는 종차별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

그리고 인간 집단과 동물 집단 사이의 도덕적 차이를 통해 동물에의 차별을 옹호하는 코헨의 논증은 '하나의' 차이가 모든 처우의 차이를 정당화한다는 잘못된 원리에 기반한다. 레이첼스(James Rachels)는 처우에서의 모든 차이를 정당화하기에 적절한, 존재들 간의 하나의 커다란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²⁸⁾ 왜냐하면 x와 y를 어떻게 처우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처우의 종류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x와 y의 수영실력의 차이는 대학입학에의 자격의 차이를 정당화하는 기준은 될 수 없지만 수영대회에서의 수상권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될 수 있다. 즉 무수하게 많은 상황에서 처우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한 가지 기준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다. 코헨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x와 y의 도덕적 능력의 차이 하나 때문에 언제나 x가 y보다 더 존중된다고 말한다.²⁹⁾ 이러한 주장은 x와 y의 성별(피부색)의 차이 하나가 대학입학, 취업, 선거권, 신체불가침권 등, 그들 사이의 모든 처우의 차이를 정당화한다는 성(인종)차별주의와 여전히 유사하다.

따라서 코헨의 도덕적 차이 논증은 (A1)의 비판을 무력화할 대답이 될 수 없으며, 종차별을 옹호하는 성공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7) Regan, T., *The Animal Rights Debate* 296쪽.

28) Rachels, J., 앞의 책, 327쪽.

29) 그래서 그는 고통을 당하지 않을 자격여부와 상관이 없는 도덕적 능력을 기준으로 x와 y의 고통회피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4. 종류논증과 가장자리 인간

4-1 종류논증

(A2)는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특성의 경계선에는 유아나 장애인과 같은 불운한 인간들의 사례가 존재하며, 종차별주의자들이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들에게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비일관성을 범한다는 비판이다.

(A2)의 이러한 비판은 코헨의 도덕적 차이 논증에도 적용가능하다. 도덕적 능력의 수준이 개의 추리능력이나 정서적 능력 이상의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면, 코헨의 주장대로 대부분의 동물들이 이 능력을 가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몇몇 가장자리 인간 역시 이런 능력을 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아나 식물인간, 심각한 인지장애인 등은 도덕/비도덕을 이해하고 성찰할 만한 도덕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코헨이 그어놓은 도덕적 권리의 조건인 도덕적 능력의 경계선 아래로 개나 생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몇 인간들도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코헨의 주장대로 동물이 도덕적 능력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동물을 차별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일관되게, 이와 유사한 능력밖에 지니지 못한 가장자리 인간에 대한 차별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코헨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즉, 도덕적 능력이 결여된 가장자리 인간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일관되게, 그는 이들과 유사한 능력을 지닌 모든 동물들 역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코헨은 (A2)의 비판에 대해 가장자리 인간은 권리를 가지지만 동물은 권리를 가지지 않을 이유가 있다고 대답한다. 그가 제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런 종류의 비판은 흔하지만 요점을 놓치고 있다... 인간의 아이들은 다 큰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가진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을 동물과 구별해주는 도덕적 판단능력은 하나하나를 인간존재로 등록하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다. 인간존재라면 자연적으로 갖출 도덕적 기능을 어떤 장애로 인해 수행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은 그 이유 때문에 인간 공동체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결정적인 특징은 한 종류(kind)라는 것이다. 인간은 권리가 그들에게 속하는 그런 종류이다... 반면에 동물들은 권리가 그들에게 결코 주어지지 않는 그런 종류이다. 장애가 생겨도 인간으로 남게 만드는 그것을 생쥐는 결코 가져본 적이 없다.³⁰⁾

즉, 유아나 식물인간, 심각한 인지장애인은 동물들과 달리 인간류(human kind)에 속한다는 것이다. 인간이라면 갖추게 될 도덕적 판단 능력을 어떤 장애로 인해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인간의 종류에 속한다. 유아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도덕적인 판단 능력을 수행하지 못하며, 식물인간은 사고로 인해 그 기능이 쇠퇴되었을 뿐 이들이 현재 도덕적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해서 인간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즉 도덕적 능력은 인간류가 지닌 여러 가지 보편적 특징 가운데 하나일 뿐 그것이 인간인지 아닌지를 규정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코헨에 따르면 가장자리 인간은 인간과 '한 종류'이므로 권리를 소유한다. 왜냐하면 가장자리 인간들이 속해 있는 인간류는 보편적으로 도덕적 능력이라는 특징을 가짐으로써 권리를 소유한 류(kind)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유아나 인지장애인, 식물인간은 도덕적 능력이 결여되었더라도 인간의 종류에 속함으로써 권리를 지니는 것이다. 그러나 생쥐나 개, 원숭이들이 속한 종류는 도덕적 능력이라는 특성을 지니지 않으며, 권리를 지니지 않는다. 코헨은 그들은 권리가 결코 주어지지 않는 동물의 종류에 속할 뿐이므로 권리를 가질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코헨은 가장자리 인간은 권리를 지니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가장자리 인간이건 정상인이건 인간들은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만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류에 속하며, 생쥐, 개, 원숭이 등 동물들은 그러한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없는 종류에 속한다고 말한다.³¹⁾ 그

30) 앞의 책, 같은 곳.

러므로 후자를 실험에 이용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전자에게 동의 없이 실험을 감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즉, 가장자리 인간과 생쥐는 그들이 속한 종류에 있어서 차이를 지니므로 동물의 권리를 거부하고 가장자리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코헨은 (A2)가 인간과 동물의 이러한 '종류의 차이'를 간과한 잘못된 비판이라고 본다.

4-2 종류논증은 옳은가?

동물과 능력이 비슷한데도 가장자리 인간에게만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묻는 (A2)의 비판에 대해 코헨이 준비해둔 '가장자리 인간의 구체책'은 가장자리 인간이 속해있는 '종류'이다. 가장자리 인간은 권리를 소유한 인간의 종류에 속하므로 동물과 달리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코헨은 가장자리 인간들에게 종류논증을 통해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모든 인간존재들은 권리를 소유하는 반면 어떤 동물도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종차별주의를 고수한다.

가장자리 인간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종류논증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인간의 종류는 도덕적 능력을 지니지만 동물의 종류는 그렇지 않다.
- (2) 따라서 인간의 종류는 권리를 가지지만 동물의 종류는 그렇지 않다.
- (3) 가장자리 인간과 동물은 도덕적 능력이 겹쳐져 있다.
- (4) 가장자리 인간은 인간의 종류에 속하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다.
- (5) 따라서 가장자리 인간은 권리를 가지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다.

코헨의 (1)과 (2)는 도덕적 차이 논증에서 주장된 바를 '종류'라는 표현으로 다시 정리한 명제에 해당한다. 코헨이 도덕적 차이 논증에서 주장하는 도덕적 능력의 유무는 인간 집단이나 동물 집단의 보편적인 특성에 따른 것

31) Cohen, C., "The case for the use of animals in biomedical research", 866쪽.

이며- 말하자면 도덕적 능력은 모든 인간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대부분의’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가진 능력이다- 이에 따라 인간의 종류 및 동물의 종류의 특성은 (1)과 같이 규정된다. 그리고 도덕적 차이 논증에 따라 (1)은 (2)를 함축한다. 그리고 코헨에 따르면 가장자리 인간은 도덕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을지라도(3) (2)와 (4)를 통해 권리를 가지며(5) 도덕적 능력이 결여된 동물(3)은 (2)와 (4)에 의해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5)

이러한 코헨의 논증은 옳은가? 필자는 세 가지 측면에서 종류논증을 비판하고자 한다.

(i) 우선, 코헨의 논증은 두 개의 권리 조건에 호소하는 비일관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1)과 (2)에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조건은 ‘도덕적 능력(MC)’이며 (2)부터 (5)에서의 권리의 조건은 도덕적 능력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지녀 권리를 가진 것으로 규정된 ‘종류(RK)’에 속함에 있다. (1)과 (2)에서 제시된 MC는 개체가 아닌 종류, 곧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2)부터 (5)에서 제시된 RK는 개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MC가 만족되기 위해서는 집단 구성원의 대부분이 그 MC를 만족하여야 한다. 즉 대다수 정상인들이 도덕적 능력을 가질 때 인간의 종류집단은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 그리고 (2)부터 (5)의 조건, RK는 가장자리 인간들과 동물들에게 적용된다. 그렇다면 다음 개체들은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권리를 지니는 것인가?

정상적인 성인 a, 인지장애인 b, 생쥐 c

a는 도덕적 능력이 있고, b와 c는 없다. 3장에서 살펴 본 바 있듯이, 코헨은 a와 c를 비교할 때에는 MC를 적용한다. 그가 a와 c의 종의 차이가 아닌 MC의 차이로 인해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 것은 인종의 차이를 근거로 차별을 가하는 인종차별주의와 거리를 두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코헨은 가장자리 인간 b와 c를 비교할 때에는 MC가 아닌 RK를 적용한다. 권리를 갖기 위해 a는 MC를 만족해야 하지만, b는 RK만 만족하면 된다. 권리의 조건이

이렇게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관대하게 해석해 볼 때 코헨의 권리의 조건은 'MC 혹은 RK'로서, 선언지 가운데 하나만 만족함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면 동물 집단의 보편적 특성에 거스르는 소수의 비정상적인, 영리한 동물들은 MC를 만족할 것이며, 이 경우 코헨은 '어떤 동물도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권리 조건의 일관된 적용을 위해서는, 필자가 보기에, 두 조건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MC를 포기한다면 인종차별과 종차별의 유사성에 대한 반론으로서의 근거 역시 포기하는 것이며, RK를 포기한다면 코헨은 가장자리 인간을 구제하지 못할 것이다.

(ii) 두 번째로 코헨의 전제, (4)의 참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 종류논증에서 사용된 '종류'라는 개념은 코헨이 원하는 만큼 가장자리 인간을 인간으로, 동물을 인간이 아닌 것으로 확실하게 분류해주는 확고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자리 인간은 인간의 종류에 속한다고 주장함에 있어서 '종류'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일반적으로 A와 B가 같은 종류라고 말할 때, 종류 개념은 유사성에 기반한다. A와 B 양자는 서로 유사한 경우에 같은 종류에 속한다고 말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콰인(W.V.O. Quine)은 종류와 유사성 개념은 같은 개념의 변형이라고 말한 바 있다.³²⁾ 그러나 A와 B가 유사한지 여부는 어떤 측면을 강조하고 어떤 측면을 배제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가능하다. 모든 색깔 있는 사물들은 색깔이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고, 빨간색의 사물들은 빨간 색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며, 노란 스카프와 초록색 에머랄드는 까만색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래서 굿맨(N. Goodman) 모든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모든 것과 유사하다고 말한다.³³⁾ 즉 A와 B의 유사성은 다양한 관점에 따라 해석될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며 이에 기반하는

32) Quine, W.V.O., "Natural Kind", *Ontological Relativity and Other Essays*, New York, London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9, 117쪽

33) Goodman, N., *Fact, Fiction and Forecast*,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England : Harvard Univ., 1983, 82쪽.

종류 역시 상대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장자리 인간은, 코헨의 (4)와 달리, 인간의 종류가 아닌 동물의 종류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 가장자리 인간은 도덕적 능력의 측면에서 생쥐, 사자, 개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혹은 가장자리 인간과 정상적인 인간, 그리고 사자는 모두 같은 종류에 속하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이들은 모두 새끼를 낳고, 척추를 가졌으며,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이다. 가장자리 인간과 인간, 그리고 생쥐는 모두 포유류이며, 척추동물이며, 고통을 느끼는 류이다.

노비스(N. Nobis)는 (4)와 달리 동물들은 쾌고감수능력, 의식, 선호, 삶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인간과 같은 종류이며, 이러한 경우, 코헨의 논리에 따르면 동물 역시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³⁴⁾ 그리고 그는 다른 한편으로 인간들은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결론도 가능하다고 본다. 인간들은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지구 위에서 살아간다는 점에서 '지구상의 존재'라는 종류에 속하기 때문이다.³⁵⁾ 동물을 비롯하여 나무, 돌, 바위, 강, 바다와 같은 지구상의 존재들은 대부분 도덕적 판단능력을 지니지 않으므로 '지구상의 존재'라는 종류는 권리를 가지지 않으며, 인간들이 이런 종류에 속하는 한, 코헨의 논리대로라면, 인간들 역시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개체들은 무수하게 많은 종류의 일원으로 해석 가능하며, 따라서 코헨 식의 결론만이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코헨은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의 종류 구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설명 없이 (4)를 참인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어째서 가장자리 인간은 포유류나 쾌고감수능력류, 동물류가 아니라 인간류이어야 하는가? 코헨은 가장자리 인간과 인간을 유사한 것으로 보아 같은 종류로 규정하는 자신의 해석은 옳지만 가장자리 인간과 인간, 그리고 동물들을 유사한 것으로 보는 해석은 틀렸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는 (4)가 거짓이라는 반론

34) Nobis, N., "Carl Cohen's 'Kind' Arguments For Animal Rights and Against Human Rights", *Journal of Applied Philosophy*, Vol. 21, No. 1, 2004, 50쪽.

35) 앞의 글, 51쪽.

에 대해 어떤 설명도 예비해두고 있는 것이 없다.

이에 대해 레비(N. Levy)는 코헨의 종류를 종(specie)으로 본다면 앞에서 제시된 문제는 해소된다고 본다.³⁶⁾ ‘지구상의 존재’나 ‘수요일에 영화를 본 존재’ ‘시간 t전에는 초록이고 t이후에는 파랑인 존재’ 등의 광범위한 분류를 종에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³⁷⁾ 가장자리 인간과 정상인은 모두 호모사피엔스(homo sapiens) 종에 속하지만 생쥐는 그렇지 않다는 분류는 확정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태너(J. Tanner)는 생물학적 종은 점차 진화하는 것이며 진화에 있어서 종과 종 사이의 정확한 경계는 없음을 지적한다.³⁸⁾ 호모에렉투스의 후손이 호모사피엔스가 되는 정확한 지점이란 없으며 진화 과정에서 종과 종 사이의 경계선상에는 슬한 가장자리 사례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는 어떤 근거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가? 또한 하나의 개체가 호모사피엔스종인지 여부는 호모사피엔스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의존한다. 도구사용, 언어, 지능적인 특징을 기준으로 삼으면 식물인간, 유아, 인지장애인은 이 종에 속하지 못할 것이며, 해부학적인 직립보행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선천적인 장애로 인해 걷지 못하는 이들 역시 호모사피엔스의 가장자리사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호모사피엔스의 기준을 ‘유전자’로 보더라도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태너가 지적하고 있듯이 인간의 자녀가운데에는 유전자 결함을 지닌 이들도 있으며 이들보다 호모사피엔스 종과 더 비슷한 유전자 구조를 지닌 침팬지들도

36) Levy, N., "Cohen and Kinds : A Response to Nathan Nobis", *Journal of Applied Philosophy* Vol. 21, No. 2, 2004, 215쪽.

37) 물론, 레비의 제안대로 종류를 생물학적인 종으로 본다면, ‘지구상의 존재’와 같은 분류는 제한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어째서 인지장애인은 포유류나 척추동물이 아닌 호모사피엔스인가?”라는 질문은 유효하다. 만일 이에 대한 대답이 보다 협소한 범위의 종류의 정의를 위해 종류를 종으로 규정해야한다는 것이라면 역시 레비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대답해야 할 것이다. : “어째서 인종이나 성별, 피부색이 아니라 종이여야 하는가?” 인종, 성별, 피부색 등등은 종보다 더 협소한 범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은가?

38) Tanner, J., "Marginal Humans, the Argument from Kinds and the Similarity Argument", *Facta Universitatis : Philosophy, Sociology and Psychology*, Vol.5, No. 1, 2006, 55쪽.

-침팬지들은 정상인의 유전자를 98.4%를 공유한다- 있기 때문이다.³⁹⁾이렇듯 호모사피엔스 종의 분류 기준에 있어서도 해석의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으며 가장자리 사례는 발생한다. 그 가장자리 사례를 구할 구체책은 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iii) 마지막으로, 코헨의 종류논증은 도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

종류논증에서 가장자리 인간이 권리를 가지는 조건은, (i)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RK에 있다. 그리고 RK의 권리 조건은 MC이다. 즉 가장자리 인간은 MC를 만족하여 권리를 지닌 종류에 속함으로써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종류가 MC를 만족한다는 것은 그 집단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MC를 만족함을 뜻한다. 말하자면 MC를 결여한 가장자리 인간 a의 권리는, 그가 속해 있는 종류집단의 다른 대다수 구성원들 y, z, w.....등이 MC를 만족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 부여의 조건을 일반적인 원리로 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원리 (K) : 특성 M을 가지는 존재는 R을 가진다고 할 때, x는 M을 가지지 않아도 그가 속해있는 집단(종류) H의 다른 대부분의 일원들이 M을 지니면, R을 지닌다.

원리 (K)를 일반적으로 적용해보면 그 부당함을 파악하기란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K)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허용하는 것이다. 수학점수가 90점 이상이면(M) 특수학교 입학 허가권(R) 가질 수 있다고 해보자. 학생 x는 70점을 받았지만 x가 속한 H학교의 대다수 학생들은 90점 이상을 받아 H의 점수는 90점 이상을 획득했다. 코헨의 원리에 따르면, x는 해당점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H학교 재학생이라는 이유로 입학 허가권을 가질 수 있다. 이는 x를 개인의 능력이 아닌 소속 집단의 우수성에 대한 편견으로 판단하는 부당한 처사이다. 이러한 (K)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에서도 자주

39) 앞의 글, 55쪽.

사용되는 원리이다. 예를 들어 특정 직장에서 이성적인(M) 사람을 회사원으로 고용(R)하고자 한다고 해보자. x는 남성(H)에 속하고, 이성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대다수의 남성들의 특성에 따라 남성 집단은 이성적이라 규정된다. (K)에 따르면 x는 남성에 속하므로 회사원으로 고용된다. 반면에 이성적인 여성 y는 남성에 속하지 않으므로 고용되지 못한다. 이는 성차별이며, 도덕적으로 부당하다.

개인을 실제적인 그들의 자질이 아닌 그가 속한 집단의 자질에 따라 판단하라고 제안하는 (K)는 부당한 원리이다. 싱어는 이러한 원리의 부당함이 특정 인종이나 성별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사용될 때는 인정되면서 우리 종의 이익을 더 옹호하기 위해 사용될 때에는 정당한 것으로 채택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한다.⁴⁰⁾

또한 종류논증의 (K)는 논리적으로도 오류에 해당한다. (K)는 인간 일반이 지닌 특성을 개별적인 개인의 특성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에 대해서는 참인 특성은 집단의 구성원에게는 거짓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합창단의 목소리가 기타 반주 소리 보다 더 크다는 것은 참일 수 있으나 그 합창단원의 일원인 개인의 목소리가 기타 반주 소리 보다 더 크다는 것은 거짓일 수 있으며, 미국인이 야구 게임을 좋아한다는 것은 참일 수 있으나 내가 어제 만난 그 미국인도 야구 게임을 좋아한다는 것은 거짓일 수 있다. 집단의 특성을 구성원의 특성으로 간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분해의 오류(the fallacy of division)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코헨은 집단의 특성을 근거로 가장자리 인간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정상인과 가장자리인간 모두를 포함한 '모든' 인간 존재가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리건은 코헨의 이러한 논증은 오류에 의존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가 주장하는 인간의 권리의 보편성은 결코 확립될 수 없다고 말한다.⁴¹⁾

따라서 코헨의 종류논증은 (A2)에 대한 정당한 대답이 될 수 없다. 도덕적 차이 논증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된 종류논증은 두 개의 권리 조건을 비

40) Singer, 『실천윤리학』, 133-4쪽.

41) Regan, T., 앞의 책, 278쪽.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며, 불확정적인 종류 개념에 호소하고 있으며, 논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원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증으로는 동물에게는 어떤 권리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가장자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인간 존재들에게는 권리를 수여할 수 있다는 코헨의 주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5. 맺음말

필자는 이 논문에서 (A1)과 (A2)에 대한 코헨의 대답인 도덕적 차이 논증과 종류논증을 고찰하고 이 논증들의 결함을 비판함으로써 두 논증이 (A1)과 (A2)의 정당한 대답이 아님을 논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반종차별주의자들은 종차별주의가 인종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와 마찬가지로 부당하며((A1)) 종차별주의자들의 주장대로 동물이 권리를 가질 수 없다면 가장자리 인간도 권리를 가질 수 없다((A2))고 비판한다.
2. 코헨은 (A1)에 대해, 동물과 인간 사이에는 인종집단이나 성별집단과 달리 도덕적 능력의 차이가 있으므로 동물에 대한 차별은 정당하다는 도덕적 차이 논증을 제시한다.
3. 그러나 도덕적 차이 논증에서 제시하는 도덕적 능력은 고통과 상관이 없으며, 따라서 인간과 동일한 동물의 고통을 도덕적 능력차를 근거로 무시하는 것은 무관함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집단 간의 차이 하나를 통해 모든 종류의 처우의 차이가 결정된다는 도덕적 차이 논증의 가정은 처우의 차이를 정당화하는 것은 처우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실수를 범한다.
4. 따라서 도덕적 차이 논증은 인간과 동물의 동일한 이익, 곧 고통을 상이하게 고려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A1)의 비판에 대해 합당한 대답이

될 수 없으며, 종차별의 정당함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도 성공적이지 못하다.

5. 코헨은 (A2)에 대해서 가장자리 인간은 인간의 종류에 속하므로 권리를 가지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으므로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종류논증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정상인과 가장자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권리를 가지지만, 어떤 동물도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종차별주의를 옹호한다.
6. 그러나 종류논증은 첫 째, MC와 RK라는 두 개의 권리 조건을 경우에 따라 비일관되게 적용하는 문제를 범한다. 그리고 둘 째, 코헨이 의존하는 '종류' 개념은 '가장자리 인간은 동물에 속한다'는 해석을 허용하는 모호한 개념이다. 그리고 셋째, 개인을 개인의 자질이 아닌 집단의 능력에 따라 판단하는 종류논증은 논리적으로 분해의 오류이며 도덕적으로도 부당하다.
7. 따라서 논리적 오류와 결함을 지녔으며 도덕적으로도 부당한 종류논증은 (A2)에 대한 정당한 대답이 될 수 없으며, 모든 인간은 권리를 지니지만 어떤 동물도 그럴 수 없다는 종차별주의를 옹호하는 정당한 근거 역시 될 수 없다.

참고문헌

- Anderson, E., "Animal Rights and the Values of Nonhuman Life", *Animal Rights*, eds., Cass R. Sunstein & M. Nussbaum, Oxford Univ., 2004.
- Cohen, C., "The case for the use of animals in biomedical research",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vol. 315, no. 14. 1986.
- Cohen, C. & Regan T., *Animal Rights Debate*, Rowman & littlefield Pub., 2001.
- Frey, R. G., *Rights, Killing, and Suffering*, Oxford : Basil Blackwell, 1988.
- Goodman, N., *Fact, Fiction and Forecast*,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England : Harvard Univ., 1983.
- Levy, N., "Cohen and Kinds : A Response to Nathan Nobis", *Journal of Applied Philosophy*, Vol. 21, No. 2, 2004.
- Nobis, N., "Carl Cohen's 'Kind' Arguments For *Animal Rights* and Against Human Rights", *Journal of Applied Philosophy* Vol. 21, No, 1, 2004.
- Rachels, J., 김성한 역, 『동물에서 유래된 인간』, 나남, 2009.
- Regan, T., *The Case for Animal Rights*, Univ. California Press, 1983.
- Regan, T., "An Examination and Defense of One Argument Concerning *Animal Rights*", *Inquiry* 22, 1979.
- Ryder, Richard D., "Painism : Moral Rules for the Civilized Experimenter", *Cambridge Quarterly of Healthcare Ethics*, Vol. 8, Jan., 1999.

- Ryder, Richard D., 박민아 외 역, 「제도적인 종차별 : 학대야말로 잘못 된 것」 『논쟁 없는 시대의 논쟁』, 이음, 2002.
- Singer, P., "Speciesism and Moral Status", *Metaphilosophy*, vol. 40, no. 3-4, July, 2009.
- Singer, P., 김성한 역, 『동물해방』, 연암서가, 2012.
- Singer, P., 황경식, 김성동 역, 『실천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1993.
- Singer, P., 황경식, 김성동 역, 『실천윤리학』, 연암서가, 2014.
- Tanner, J., "Marginal Humans, the Argument from Kinds and the Similarity Argument", *Facta Universitatis : Philosophy, Sociology and Psychology* Vol.5, No. 1, 2006.
- Quine, W.V.O., "Natural Kind", *Ontological Relativity and Other Essays*, New York, London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9.
- 김성한, 「종차별주의 옹호 논변에 대한 대응」, 『철학연구』, 79권, 철학연구회, 2007.
- 최훈, 「간접적 도덕적 지위 이론 비판」, 『철학연구』, 철학연구회, 102권, 2013.
- 최훈, 「동물신경윤리 : 동물 고통의 윤리적 의미」, 『생명윤리』, 10권, 2호, 2009.
- 최훈, 「영장류 실험의 윤리와 가장자리 상황 논증」, 『과학철학』, 12권, 2009.
- 추정완, 「싱어의 종차별주의 비판」, 『생명윤리』, 한국생명윤리학회, 2005.

Abstract**Is Cohen's supportive argument for
speciesism right?**

**- centering on moral difference argument and
kind argument**

Chaelee Le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riticize that Cohen's moral difference argument and kind argument can't be a right answer to anti-speciesist's criticism (A1) and (A2). Anti-speciesists criticize that speciesism, like racism or sexism, is unfair(A1) and that if animals cannot have their rights, marginal humans can't, either(A2). Regarding (A1), Cohen presents his moral difference argument that discrimination of animals is fair since there is difference in moral capacity between humans and animals. Regarding (A2), he presents his kind argument that marginal humans own their rights since they belong to human kind. However, I criticize that moral difference argument is a standard unrelated to pain, and that kind argument presents inconsistent conditions and (4) is not inevitably true but a morally unfair principle. Accordingly, I insist that moral difference argument and kind argument can't be valid answer to (A1) and (A2).

【Key words】 Speciesism, Moral Difference Argument, Kind Argument,
Rights of Animal, Marginal human, Carl Cohen

논문접수일: 2015년 5월 15일, 심사완료일: 2015년 6월 12일
게재확정일: 2015년 6월 16일